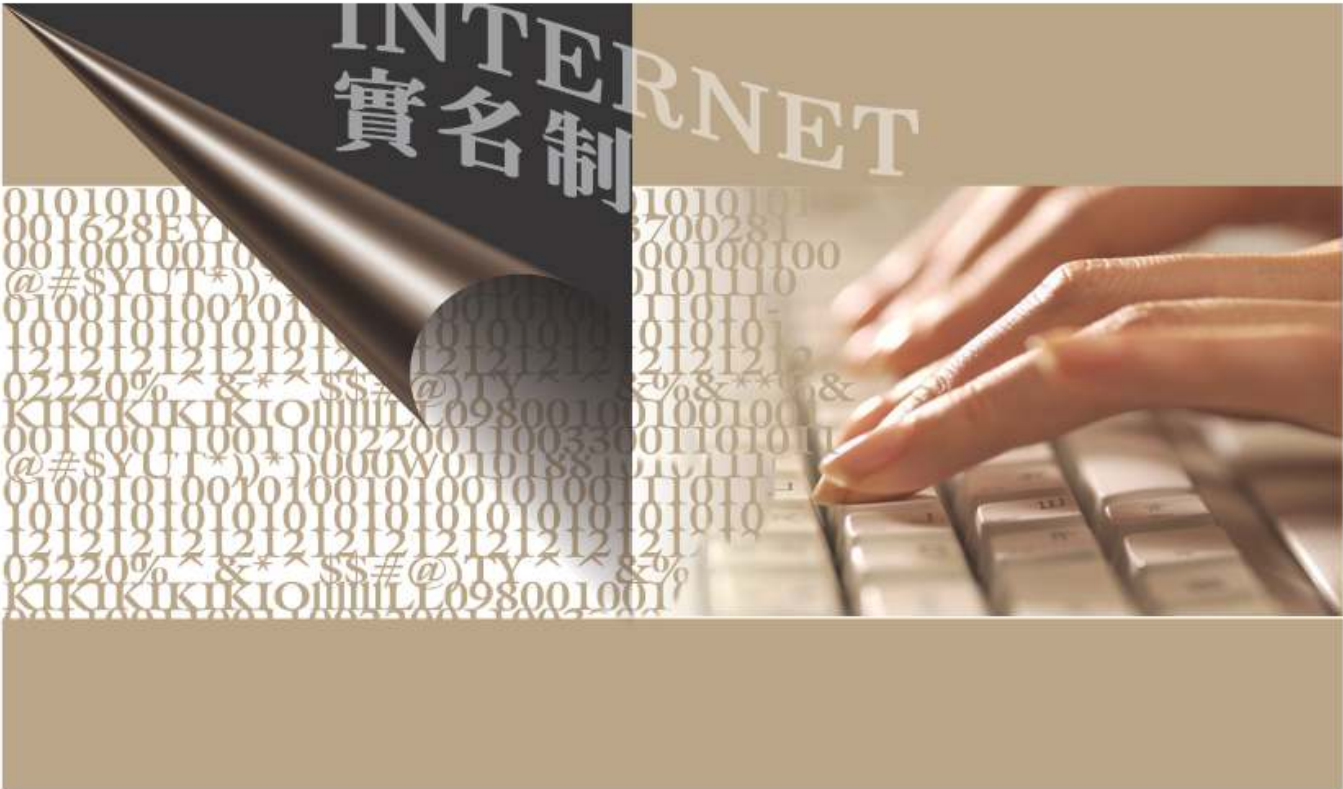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일시: 2005년 11월 1일(화) 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진행순서

※ 사회 : 강치원 교수(강원대학교)

시간	내 용	비고
10:00	개회선언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10:00 ~ 10:10	개회사 - 국회의원 진 영/ 국회의원 유승희	
10:10 ~ 10:25	<발제1> 인터넷 익명성 논의경과 및 대책방향	라봉하 과장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10:25 ~ 10:35	<발제2>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 적합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교수 (한림대 법대)
10:35 ~ 10:45	<발제3>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김경달 본부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래전략본부)
10:45 ~ 10:55	<발제4>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민경배 교수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
10:55 ~ 11:40	패널 토론	패널전체
11:45 ~ 11:55	질의 응답	참여자 전체
11:55 ~ 12:00	정리 및 폐회	

인터넷 익명성 문제 논의경과 및 대책방향

라봉하 과장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인터넷 익명성 문제 논의경과 및 대책방향

1. 2005년도 이전의 논의 및 평가

- 과도한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1년경부터 역기능 해소대책으로 정통부는 인터넷 실명제 추진 의향 제시
 -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 네티즌 등은 찬반으로 양분화 되었으며, 반대측은 표현의 자유 제약, 인터넷의 국민 전자감시 수단화 우려 등 강한 비판 제기
- 종래 실명제 논의는 실명제의 정의, 적용범위, 집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부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표현의 자유 등 관념론적 논쟁으로 치우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웠음

2. 2005년도 논의배경 및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 구성

□ 논의배경

- 연예인 X-파일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폐해가 빈발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부각됨

< 게시물 및 댓글 등에 의한 피해사례 >

사건명	일 시	내 용
연예인 X파일	2005.1	유명 연예인 99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사실 유포
신생아 학대사건	2005.4	간호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신생아 학대사진이 유포되면서 전국의 산부인과로 의혹 확산, 경찰 전면수사 착수
가출 여중생 사건	2005.4	체벌 혐의를 받던 여교사가 자살하자 이를 알린 여중생에 대한 비난글 확산, 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가출함
트위스트 김 사건	2005.4	연예인 트위스트 김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로 몰려 피해
장애아 폭행사건	2005.5	대학생이 장애아를 폭행한 사연이 게재되면서 가해 학생의 이름, 학과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포됨
서모씨 자살사건	2005.5	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자살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이 해당 남성을 추적해 인터넷에 실명 등 공개
도둑누명 여고생 사건	2005.5	도둑누명을 받던 여고생이 자살하자 인터넷상에 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포, 가해자 처벌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촛불시위 확산
개똥녀 사건	2005.6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사진 유포

□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 구성□운영

- 인터넷의 익명성이 만들어 내는 ‘탈억제 효과’가 ‘자기책임성’에 대한 관념을 희석함에 따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 과거의 실명제 관련 논의와 접근방법을 달리하여 현실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실명이 필요한 범위 및 구현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으로 접근하여 실제적인 논의를 추진
- 이를 통해 off-line에 상응하는 정도의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을 구성(6.30)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학계(서강대 왕상한 교수(좌장) 등), 업계(NHN, 다음, 인터넷기업협회 등), 시민단체(YMCA 등) 참여

3.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 활동경과

구분	일시	발표기관	발표자	발표 및 토의내용	
현황 파악 세션	1차	6.30	다음	석종훈	인터넷 익명성에 관한 견해
			SK커뮤니케이션즈	윤지영	게시판 운영 현황
	2차	7.7	NHN	김종철	네이버 회원제도 및 본인확인 방법
			디시인사이드	박주돈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운영 현황
			KISA	이창범	인터넷상 본인확인 현황과 문제점
	3차	7.14	포탈피해자모임	변희재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문제
			한양대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실시의 당위성
	4차	7.2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용완	사이버범죄 피해자 구제절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종현	사이버폭력 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차	8.4	진보네트워크	이은우	익명 표현의 가치와 한계
대안 마련 세션	1차	8.11	KISA	이창범	인터넷 불법정도 가처분제도 도입방안
			숙명여대	도준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책임의 한계
	2차	8.18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
			YMCA	김종남	인터넷 게시판과 익명성의 문제
최종워크샵	9.2	-	-	對정부□對사업자□對이용자 권고 작성	

4.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 권고

- 동 연구반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익명성에 의한 '자기책임성' 결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안(9.2)

-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실명제' 도입

□인터넷상의 행위자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제는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습효과, 인식제고 등을 통해 인터넷상 행위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

□특히 전파성, 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은 이미 매스미디어에 준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므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소규모 사업자□개인□정당 및 사회단체□공공기관 게시판 등은 익명□실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익명의 공간을 충분히 허용함으로써 익명성과 실명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제한적 실명제' 도입

-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해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인터넷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규제 촉진 및 '인터넷 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심의기구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 강구

<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 권고 >

對정부 권고	- 영리성, 전파성, 파급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제한적 실명제') - 필명□ID 사용 허용 - 사업자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對사업자 권고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인터넷 가처분제도' 도입
對이용자 권고	-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등 이용자 실천사항 제시

※ 연구반 권고를 바탕으로 정통부는 '제한적 실명제' 정책방향 발표(9.12)

5. '제한적 실명제' 관련 여론동향

-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한적)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03년 실명제 논란시에 비해 매우 높아졌음
 - 국무조정실 한국갤럽 조사(9.5 ~ 9.10, 1,684명 대상) : 효과적 75.6%, 비효과적 10.7%
 - 네이버 poll(9.12 ~ 10.13, 4,947명 참여) : 찬성 76.2%, 반대 23.7%
 - 야후 poll(9.12 ~ , 현재 1,782명 참여) : 찬성 80%, 반대 19%
 - YMCA 조사(9.9 ~ 9.14, 2,079명 대상) : 찬성 71.7%, 반대 8.2%
 - 전자신문 조사(9.23 ~ 9.30, 203명 참여) : 찬성 72.9%, 반대 25%

6. 향후계획

- 현재 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법문안 작업 중인 바, 폭넓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

[붙임]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 對정부 · 對사업자 · 對이용자 권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혜택과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게재·전파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이용자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인터넷이 각종 불법·불건전 정보로 오염되어 정보사회의 신뢰성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익명성에 의한 자기 책임성의 결여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자·이용자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2005. 9. 2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 일동

『대정부 권고』

1.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피해신고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게시판 또는 댓글란에 소비자상담창구(피해신고란) 설치 의무화

○ 민원 처리자 및 책임자 지정 의무화

나.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아래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게시판 및 댓글란에 특정 양식, 특정 색상, 특정 크기의 글로 불법정보·명의로용 등에 대한 처벌 등

다. 게시판 운영자에 대해 게시판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인터넷 피해구제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터넷 가처분 제도(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문제가 제기된 정보에 대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운영근거 마련

○ 정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가처분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인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자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정부는 공개적이거나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채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다. 정부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수 또는 일일방문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파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인터넷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인확인 의무화가 필명, 가명 등에 의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정부는 본인확인 수단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사업자는 본인 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3. 인터넷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활동과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습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인터넷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피해를 야기시키는 제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학계·업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구를 지속·추진하여야 한다.

『대사업자 권고』

1. 인터넷 기업은 고객지원 효율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특히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나. 특히 댓글 폐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그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Best practice를 공동 적용하는 ‘인터넷기업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2.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이용자 권고』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야기되고 있는 오늘날의 폐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1. 욕설 · 비방을 하지 않는다.
2. 음란물 · 폭력물 등 불법 내용물을 유포하지 않는다.
3. 허위사실 ·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는다.
4.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지 않는다.
5.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발제 2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2004년 3월 12일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에 소위 ‘인터넷 실명제(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계시관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기도 하였다. 선거계시관 실명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도화되었지만, 사실 2003년 상반기에 이미 정보통신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부터 실행하고,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통해서 민간영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한 적이 있었고, 결국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백지화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공론화 내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을 생략한 채, 정치권에서는 급박하게 선거계시관 실명제를 공직선거법에 도입하였고, 이러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일부개정된¹⁾ 공직선거법에서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다.

사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소위 ‘인터넷선거’로 비유될 정도로 인터넷의 위력이 막강했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당락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을 절감한 정치권은 2004년 4·15총선이 실시되기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계시관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도입한 선거계시관 실명제 이외에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패러디’에 대해서도 경찰 및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을 적용하여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선거계시관 실명제의 도입이라든지 혹은 패러디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표방하는 대의명분은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라든지 패러디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적용 등은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 내지 제도화가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들어와서부터는 소위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을 계기로 다시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역기능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인터넷전반에 확대하려는 시도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면서,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글은 헌법적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이번 개정에서 법률명칭 자체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다.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기본개념 및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위헌성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넘어서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의 위헌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한다.

II.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의 이면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정의의 부재가 혼란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도화되었거나 추진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들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현재까지 제도화되었거나 추진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이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혹은 기타 실명인증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만 의견이나 글의 게시가 가능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의견이나 게시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둘째, 현재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일반게시판 실명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등은 항상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지며, 본인 여부가 확인된 이용자만이 당해 웹사이트 등에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일반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 이외의 일반 웹사이트를 그 적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보다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형태의 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 인터넷 실명제’²⁾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적용대상의 면에 있어서 인터넷언론사나 혹은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게시판에서의 의견게시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 혹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과거 및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거나 혹은 제도화된 실명제의 유형은 크게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그 적용대상이나 내용의 차이를 불문하고,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방식도 자율적 방식이 아닌 제재조치에 의한 담보되는 법적 강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본인인증방법은 주민등록

2) 1998년 정보통신부가 발안하였던 통신실명제가 이러한 유형의 실명제에 해당한다. 즉 이 당시에 정보통신부가 발안하였던 통신실명제는 통신과정에서의 어떠한 방식의 ID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제의 신원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 당시 통신실명제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한상희,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정보법학」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370-374면 참조.

번호를 이용하거나 기타의 실명인증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그 적용대상이 인터넷언론사에 국한하느냐, 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까지 확장하느냐, 아니면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되느냐가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선거관련 게시판에 있어서의 선거 및 정당·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적용하느냐, 일반게시판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느냐, 아니면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에 적용하느냐가 또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및 공통점·차이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실명제는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Ⅲ.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내용 및 헌법적 문제점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변천과정

(1)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바,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에게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이것을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도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의무적 형태가 아닌 임의적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용정보업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1조는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정당·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임의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4항은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6항은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7항은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항은 제82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조 제2항 제3호는 제82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내용적 특징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내용과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04.3.12.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	2005.8.4.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
기본구조	실명확인 후 의견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인터넷언론사에게 부과	실명확인 후 의견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인터넷언론사에게 부과
의무화 대상	인터넷언론사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적용 대상 서비스	인터넷언론사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실명제 적용 대상 표현	선거에 관한 의견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실명확인방법	·의견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공한 실명인증 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로 관리해야 함.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할 수 없음.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방법	인터넷언론사는 의견게시자가 허무인이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 이용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 불가능하게 할 의무 및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의 삭제 의무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의무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의무
의무 위반시 제재 조치	인터넷언론사가 실명확인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언론사가 실명확인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의 삭제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내용을 살펴 볼 때, 선거게시판 실명제란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대해서만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의 예를 들면 일정한 전단이나 인쇄물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지만 의견개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자신의 실명을 밝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출판사나 인쇄소를 이용하여 전단이나 인쇄물을 제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3.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

다.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이다. 즉 선거게시판 실명제라는 것은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 쟁점이 된다.

둘째, 인터넷언론사의 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5는 인터넷언론사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³⁾ 그런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그밖에 인터넷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 경영·관리자가 사업경영 및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비회원제 방식이라든지 비실명확인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이들 인터넷언론사의 사업수행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도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분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핵심쟁점 이외에도 평등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관련조항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섭범위의 과도한 광범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의 헌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V.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위헌 여부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익명표현의 자유의 침해

3) 원래 공직선거법 제8조의 5는 인터넷언론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8. 5.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정의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상의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추가하게 된다. 한편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우선 ‘익명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선거계시관 실명제를 도입한 목적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적 주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목적은 다른 제도 예컨대 명예훼손법이라든지 특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상의 후보자비방죄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규제수단 이외에 선거계시관 실명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중첩적이고도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self-government)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특히 개인의 언론 활동이 ‘정치적 표현(political speech)’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과정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에 대한 감시와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며, 정치적 언론이 숨쉬는 열린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형성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민주사회의 참된 모습이자 현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의 원리상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의 의사표현은 정치적 표현 중의 핵심으로서 대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라든지 선거의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이라든지 혹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은 기타의 언론활동 예컨대 상업적 언론이라든지 개인적 언론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여(제58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에 대한 공선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제58조 제2항)을 염두에 둘 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장치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선거계시관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위축효과'로 인해 정치적 표현이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영업의 자유의 침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그밖에 인터넷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 경영·관리자가 사업경영 및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이라든지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이들 인터넷언론사의 사업수행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비회원제방식이라든지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은 오히려 정치적 표현이 보다 원활하고도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을 영업방법의 일환으로 일부러 채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의사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표현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이라든지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이러한 영업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의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4.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통해서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집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 이외의 목적에 활용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전산망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결국 인터넷언론사는 신용정보업자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가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이라고 한다면,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든 간접적으로 활용하든 개인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물론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구체적인 실명인증방법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서, 법률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곧바로 제기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적용될 실명인증방법의 개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5. 평등권의 침해

‘평등 및 비용’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관 실명제에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전산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는 신용정보업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신용정보업자의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신원확인 때마다 지불해야 할 비용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선거에 관한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인 인증의 방법으로 제기되는 신용카드번호확인방법이 갖는 문제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6. 포섭범위의 과도한 광범성

마지막으로 ‘선거게시관 실명제의 적용대상의 범위’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 5는 인터넷언론사를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사실 기존의 언론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도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여론형성이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들도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정의는 규제대상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또한 지적될 수 있다.

V. 일반게시관 실명제의 위헌 여부

1. 일반게시관 실명제의 내용

2003년부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인터넷 실명제의 실체가 2005. 9. 12. 정보통신부 주최의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토론회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권장된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

2. 본인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자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정부는 공개적이거나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채

4) 정보통신부 주최, 「익명성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 자료집」, 2005. 9. 12. 3면.

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다. 정부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수 또는 일일방문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과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인터넷 폐해가 특히 우려되는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인확인 의무화가 필명, 가명 등에 의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정부는 본인확인 수단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사업자는 본인 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위에서 본인확인 의무화가 필명, 가명 등에 의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명제는 소위 '제한적 실명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결국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은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쓰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에만 글을 쓸 수 있고, 여기서 본인확인방법은 자발적 방식이 아닌 의무화방식이다. 그리고 본인확인의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등은 항상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그리고 본인 여부가 확인된 이용자만이 당해 웹사이트 등에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인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정부가 본인확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선언적 의무를 지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사업자는 본인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일반게시판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의 헌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 내용으로서 말 그대로 익명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 표현과 관련될 때는 상당한 정도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표현의 특성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정부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은 익명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기존의 민형사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을 추진하려는 입법목적은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개인정보침해 등 익명성을 이용한 타인의 인격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기

존의 민형사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형사수단 이외에 새로운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말미암아, 그 위헌성을 면할 수가 없다. 즉 외형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본인확인절차가 갖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은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이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DB를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의뢰해서 일치 여부에 관한 답변만 들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을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DB를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단지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통부가 본인확인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DB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시 일정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그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원가입절차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서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DB를 갖고 있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자신의 사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던 회원가입정책을 새롭게 채택해서 개인정보 DB를 구축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사업자에게는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방식을 채택할지 안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영업방식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에 반한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적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본인확인시스템을 정부가 개발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의 채택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촉진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적용대상이 되게 만들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지게 만들기도 한다.

넷째,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이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즉 본인 여부의 확인절차의 기본전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기본취지가 부인된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지,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만약에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너무나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⁵⁾

그런데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안 중의 하나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사업자는 본인 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본인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이용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결국 ‘면제’라는 용어가, 사업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결과적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제도화된 ‘선거계시관 실명제’와 현재 정통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일반계시관 실명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실제로 익명성이라는 요소가 선거계시관 실명제나 일반계시관 실명제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혹은 그 위축효과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효과를 유발하는 선거계시관 실명제나 일반계시관 실명제는 과도한 제한수단이 아닐 수 없다. 역기능을 방지하거나 규제하는 기존의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선거계시관 실명제나 일반계시관 실명제의 과도한 수단성을 증명해 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및 역사의 진보를 이끌었던 혁명이라든지 사회운동들이 성공한 이면에는 익명에 의한 구 체제 및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이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들도 익명에 의한 표현의 가능성이 완전히 보장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선거계시관 실명제든 일반계시관 실명제든간에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들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념 및 목적들을 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5) 현재 2004. 6. 24.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담배도매업자 내지 소매업자가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면세담배의 용도 외 사용 여부에 관하여 관리·감독권 내지 의무가 없는 담배제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사례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계시관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계시관 실명제도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김경달 본부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래전략본부)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김경달(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래전략 본부장)

1. 서론

사이버 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자 인터넷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터넷 기업들의 숙원이다.

이미 인터넷 기업들도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모니터 요원과 피해구제를 위해 이미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하고 있다.

일례로 Daum의 경우에는 100여명(전체 직원의 약 20%)의 모니터링 요원과 피해구제 관련 업무 요원이 있으며, 물론 사회적 기대에는 못 미칠 수도 있겠으나, 권리침해센터, 스팸센터 등의 피해구제 전담팀의 운영은 물론 사이버 가처분 제도와 같은 제도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와 토론 문화의 정착이야 말로 인터넷이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에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인터넷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만연과 인터넷 공간의 오염은 인터넷 기업의 입장에서조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개별 인터넷 기업의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폭력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이버 폭력의 문제는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결여한 조급한 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채, 조급하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자칫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으며, 오히려 다른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생겨날 수도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이 실제 사례와 현상에 기반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

현재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논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진단을 토대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개똥녀 사건”이나 인천 S고 여고생 자살 사건 등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사회에 환기시키며 최근의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더욱이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사이버 폭력 사범은 2002년도에는 3,546명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3,783명으로 늘어났고, 2004년도에는 4,214명으로 늘어나, 매년 연평균 8.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오늘날 우리사회의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는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모색해 왔다.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 중 현재 여론이나 정책영역에서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제한함으로써 첫째, 누리꾼들 개개인의 자기 검열을 유도하고, 둘째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자는 실명제 실시방안인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방식이 우리가 우려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이버 폭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이를 단일한 문제로 파악하고 실명제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인 식에서부터 근원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 원인 및 전개양상에 따른 사이버 폭력의 분류

악의적 범죄행위로서의 사이버 폭력과 누리꾼들의 집합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발적 사이버 폭력은 그 원인과 전개양상에서부터 구별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사이버 폭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비록 사이버 폭력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한 법제도적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현재우리사회에서 사이버 폭력이라 함은 크게 두 차원의 문제들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인 듯 하다. 첫 번째는 해킹, 명의도용, 성폭력, 명예훼손, 유해정보 유포, 사기, 범죄공모 등 명백한 범죄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미니홈피 등을 통해 수많은 누리꾼들이 집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발적 사이버 폭력이 그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 폭력의 증가추세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이중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사이버 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를 비롯하여 공식적인 통계수치로 전달되는 많은 수의 사이버 폭력은 사실상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7월 11일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정보침해가 26.8%로 사이버 폭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계정 등 해킹(64%) 및 인적사항 도용(23.1%)과 같은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범죄행위들이며, 그 외에도 명예훼손(20.3%), 공갈 협박(14.0%), 성폭력(13.5%) 등 오프라인 상에서도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되는 악의적인 사이버 폭력을 의미한다.

반면, 최근 실명제 논의의 기폭제가 된 크고 작은 사건들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로, “S대 도서관 폭행사건”이나 “인천 S고교 여고생 자살 사건” 등과 같이 카페나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들이 집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라는 범죄행위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연예인 누드 합성사진 사건”이나 “모델 B씨 사망 기사유포”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악의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구별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악의적 범죄행위로서의 사이버 폭력과 그 원인 및 해결방안

악의적 범죄행위로서의 사이버 폭력은 이미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행 법체두리 안에서 철저한 수사 와 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명확한 법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악의적 범죄행위로서의 사이버 폭력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의 처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2조 제 1항은 "음란, 명예훼손, 협박,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범죄의 공모·교사 방조, 국가기밀누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상에서의 범죄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같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명예훼손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

고 사행행위나 협박, 범죄 공모, 국가기밀 누설 등의 명백한 형법 위반 행위 등은 온라인상에서도 규제, 처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 역시 이용약관을 통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다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NHN) 등에 대한 삭제조치 및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범법행위들에 대해 사용자들에 명확히 알리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은 이러한 유형의 범법 행위 외에도,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다음),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이상 NHN) 등 저작권 침해,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행위들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데,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음란, 폭력물 게시 등 미풍양속 저해행위를 비롯하여 명예 훼손,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행위들을 이미 사이버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제도적, 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나 명의 도용, 성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익명성 보다는 상당부분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엄격한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사이버 폭력 사범들에 대한 강력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실명제는 악의적 범죄행위를 보다 부추길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악의적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아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와 명의 도용이 사이버 폭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개인의 정보가 보다 명백하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사이버 폭력을 부추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사범들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명의 도용이나 아이피 변경을 통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도 아닌 것이다.

2-3. 우발적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반면, 최근 실명제 논의의 중요한 발단이 되었던 사이버 폭력 사건들은 대체로 악의성이 없는 누리꾼들의 집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우발적인 개인 신상공개나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일어난 사건들로서 그 원인과 전개 양상에서 있어 명백한 범죄의도를 가지고 자행되는 악의적 사이버 폭력사건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우발적 사이버 폭력 사건의 개요

사건명	일시	주요 내용
S대 도서관 폭행 사건	2005.03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한 학생이 정숙을 요하던 다른 학우를 폭행한 사건. □가해자 및 가해자의 여자친구의 개인 신상정보 및 미니홈피 주소가 공개됨 □사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였으나, 누리꾼들의 항의로 학교 측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체벌 여 교사 자살사건	2004.04	학생체벌로 경찰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한 사건 □교사의 자살이 피해 학생측의 압박에 기인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피해학생의 실명과 학교가 공개됨으로써 피해학생이 정신질환을 호소
서모씨 자살사건	2005.05	사귀던 김씨와의 갈등관계를 비판하고 김씨의 매몰한 응대에 배신감을 느낀 서씨가 자살한 사건 □서씨의 어머니가 서씨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긴 사연과 억울

		<p>한 사연을 게재</p> <p><input type="checkbox"/>김씨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대대적 사이버 서명운동 전개</p> <p><input type="checkbox"/>김씨의 경우 회사생활 어렵게 됨</p>
S고 유모양 자살 사건	2005.05	<p>7명의 친구들에게 도둑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16세 여고생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p> <p><input type="checkbox"/>유양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11일에 게재 (유양의 학교 친구들이 원한을 풀어준다 하여 관련 내용과 유서의 내용을 포털에 공개)</p> <p><input type="checkbox"/>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실명과 얼굴사진 인터넷상에 공개됨</p>
포피모 소송 이후		
개똥녀 사건	2005.06	<p>지하철에서 애완건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한 여성의 동영상이 공개된 사건</p> <p><input type="checkbox"/>해당 여성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진행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음</p>
부산 G중 폭행 사건	2005.10	<p>부산 G중학교 교실에서 C(14구속)군이 홍모군을 폭행, 숨지게 한 사건</p> <p><input type="checkbox"/>홍모군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을 비판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 C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하였으나, 인터넷 업계의 관련 정보 차단으로 누리꾼들의 항의 거세짐.</p> <p><input type="checkbox"/>가해학생과 유명 인터넷 포털업체와의 유착관계설 등 괴소문이 유포되기도 함.</p>

우발적 사이버 폭력사건들은 대체로 실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건들에 대한 건강한 고발과 토론에서 시작되지만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면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범죄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정리한 우발적 사이버 폭력 사건들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수의 사이버 폭력사건들은 학교폭력, 공중도덕 위반과 같이 일반 공중들의

실생활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대 도서관 폭행사건이나 최근의 부산 G중학교 폭력사건, 밀양 성폭력 사건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이 느끼는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도, 공권력에 의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리꾼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건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그에 대해 비판과 토론을 진행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 혹은 사건에 대한 비판이 특정 시점에서 특정 개인이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니홈피 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때,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 협박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우발적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즉 익명성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실제로 S대 도서관 폭행사건이나, S고 유모양 자살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부산 G중학교 폭행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많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개인의 행위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특정 개인의 학교나 직장, 이름이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의 실명 미니홈피를 통해 보다 자세한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진 등이 유포됨으로써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협박, 명예훼손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발적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름만 알아도 개인의 사진은 물론 세세한 사생활까지 개인의 모든 정보가 쉽게 파헤쳐질 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이 개개인의 행위만 규제한다면 그것은 법적 정당성은 물론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마구 파헤치고 욕설과 비방을 일삼

는 행위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개개인의 행위만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이버 윤리의식의 미성숙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복합화'에 따른 윤리적 혼란 현상은 우발적 사이버 폭력의 또 다른 원인이다.

더욱이 사이버 폭력의 상당부분이 학교 폭력과 같이 아직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슈의 중심에 서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사건이 확대되고는 한다.

따라서 이들 규제와 처벌에 앞서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누리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중심이 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개똥녀 사건이나 개인간 치정의 문제와 같이 매우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접하게 되는 사적 영역의 사건인 경우가 많으므로, 누리꾼들이보다 쉽게 공감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 형사처벌과 같이 공적 영역에 의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누리꾼들 역시 그것을 공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홍보기'나 '망신주기' 등의 사적인 처벌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사이버 폭력 사건들은 매우 사적인 영역의 사건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부각되면서 일상적으로 잘못되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 비난하는 등의 사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공적 영역으로 옮겨오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윤리적 혼란 현상이며, 이 또한 규제보다는 보다 건전한 게시판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문화적/시스템적 환경, 예를 들어 불량 이용자에 대한 경고 등 게시판 중재자 시스템이나 깨끗한 게시판 문화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 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제한적 실명제의 문제와 한계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익명성에 기댄 누리꾼 개개인의 비윤리성에서 찾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오류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의 문제는 익명성에 기댄 누리꾼 개개인의 비윤리성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익명성이 온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 시장의 구조적 결함과 명백한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공중의 윤리의식 미성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제한적 실명제 논의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화적 문제를 “개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는 그 원인 진단에서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는 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한계들을 내포하고 있다.

3-1. 제한적 실명제의 법제적 한계와 부작용

익명성이 온전히 보호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수많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없이 누리꾼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그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제한적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결여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의 중요한 원인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즉 익명성이 온전히 보호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많은 사이버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후적인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논의는 위법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누리

꾼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사후 처벌을 용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한적 실명제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법제이며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 실명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통부 내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 정책적 일관성도 결여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정통부 역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개발, 사회 전체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법제화 하는 제한적 실명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용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제한적 실명제는 사실상 모든 인터넷 업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과잉규제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감 정보의 축적을 조장하는 우려 범할 수 있다.

제한적 실명제는 대형 인터넷 업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근거로 ‘500만명의 이상의 회원을 가진 인터넷 업체’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 이는 결코 제한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어느 사업 분야보다도 역동적인 인터넷 시장 환경에서는 500만명의 회원을 가지지 못한 중소 업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5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업계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회원의 입장에서조차 적지 않은 심리적, 물리적 비용이 소요되는 실명제를 서비스 운영 도중에 보강, 수정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실명제를 적용함으로써 도중에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 하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이 실명제를 실시, 결코 제한적이지 않은 전면 실명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적 실명제는 자칫 익

명성이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서조차 실명제가 적용되는 과잉 규제를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축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실명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단의 부재로 인해 제한적 실명제는 법리적 모순에 빠져있을 뿐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제의 실질적인 적용의 측면에서도 제한적 실명제는 커다란 결함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는 인터넷 업체들이 ‘신뢰할만한 본인확인 수단’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신뢰할만한 본인확인 수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그것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업계 스스로의 과잉 규제 등 작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3-2. 제한적 실명제의 실질적 한계와 부작용

이러한 법제적 한계와 모순을 제외하고서라도 제한적 실명제는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명백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행위자가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사이버 폭력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악의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사이버 폭력이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법행위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사이버 폭력사건들이 아직 윤리관이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현재의 온라인 문화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도기 적인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지켜야할 규율인지를 계도하는 과정이 없이 본인확인 절차를 두는 것은 사실상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완전 실명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사이버 폭력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니홈피 사이트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은 본인확인이라는 접근 방식이 결코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악의적 범죄행위들이 명의 도용이나 IP변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명제는 악의적 범죄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조장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부분의 악의적 사이버 폭력행위들이 명의 도용이나 IP변조 등, 음성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본인확인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막고자 하는 시도는 악의적 범죄행위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악의적 침해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함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를 고사시키는 것이 제한적 실명제의 가장 큰 한계이자 부작용이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결여한 제한적 실명제 논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사이버 폭력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업체들의 민감 정보 수집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제한적 실명제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개인의 자기검열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직 의사의 의료수가 공개', '현직 공무원 부인의 공무원 월급 공개' 등과 같이 **최근 익명의 힘을 빌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수많은 누리꾼들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고사시키는 극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한적 실명제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업계 전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진지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터넷 기업의 숙원이다.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 폭력 문제는 우리 인터넷 기업의 이익은 물론 인터넷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터넷 기업의 숙원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명제에 반대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업들의 노력이 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으나,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이 업계의 이해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서비스 유연성의 저해이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제한적 실명제가 사실상 의무화됨으로써 실명인증이 불필요한 서비스 영역은 물론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기존의 서비스들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업계의 유연성이 크게 저해되는 상황이다.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논리는 이미 정통부가 실명제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온 기본 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고 복합적인 인터넷 산업 환경의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두 가지 영역의 구분이 가능할 것 같으나 실상 어느 부분은 실명제를, 어느 부분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아이디로 수십 개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서비스의 경우 아이디가 어떤 서비스는 실명으로 어떤 서비스는 익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운영의 측면에서나 적용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실명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칫 업계의 서비스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발전적 서비스들이 만들어 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정통부의 지침과 법령들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모순적인 규제들이 남발됨으로써 업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 역시 우려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통부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 등, 실명제와는 상호 모순적인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우 이율배반적인 정책들을 업계의 입장에서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뿐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정책을 업계가 모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현재 업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규제들이 남발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경계하

고자 한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제한적 실명제를 필두로, 인터넷 환경에 대한 최근 정부의 정책들은 인터넷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개인 혹은 개별 기업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 폭력의 문제는 개별기업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전반의 법제도적 문화적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단체, 민간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공동의 문제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의 유연성을 저해함으로써 나아가 인터넷 산업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업계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해왔고, 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다.

업계는 사이버 가처분, 블라인드제도, 게시판 운영 강화, 네티즌 신고제도 등을 통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자율 규제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 사이버 폭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바로 인터넷 업계들 자신이다. 사이버 폭력은 자칫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에 막대한 물리적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의 질 자체를 크게 훼손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업계는 그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이버 가처분 제도는 불건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인간 명예훼손 사건 발생시 사법 기관의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추가적인 권리의 침해를 막아주기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제도로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이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게시판 신고제도, 게시판 운영 강화 방침 등 각 업체들이 각각 사용하고 있던 효과적인 사이버 폭력 방지책들을 공유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개똥녀 사건이나 부산 G중학교 폭력사건의 경우 각 업체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과거의 사이버 폭력사건들과 같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이버 폭력은 개별 기업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폭력은 개별기업이 판단하고 조치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체 사이버 폭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원 및 이에 준하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명예훼손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급하게 명예훼손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그것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사이버 가처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임시적인 조치에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판단을 내려줄 기구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어느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위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못한 범죄 행위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인터넷 업계는 '삭제'나 '경고'등의 조치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부산 G중학교 폭행 사건의 경우 오히려 포털들의 지나친 삭제 조치로 누리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명확한 처벌, 그리고 신속한 판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악의적 사이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명확히 처벌하며, 사이버 폭력 사건의 발생시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른 범죄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야말로 악의적인 사이버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인터넷 기업협회를 통해 업계가 제안한 바와 같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와도 같은 준사법기구의 설치 및 운영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함께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건강하고도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깨닫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도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의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민경배 교수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이버 공간에 또 한 차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기업협회, IT산업노조 등 각계에서 잇달아 반대 성명이 발표되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실명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YMCA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실명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명제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73%가 우려의 태도를 보였으며 56%의 응답자가 자유로운 정보 교류나 의견 교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이버 폭력의 방지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정통부의 입장과 그로부터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염두에 둔 시민단체의 반대 논리가 동시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예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에 그리 새삼스러운 사안은 아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갖가지 욕설과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이 게시판에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 공간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익명성으로부터 비롯된 폐해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된 것이 다름 아닌 인터넷 실명제이다. 즉 인터넷 이용을 실명으로 한다면 이용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정말로 익명성이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일까?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들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지금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실명제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익명성의 위험보다도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부터 인터넷 실명제의 함정과 그것이 빚어낼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1.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과거 PC통신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시 PC통신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요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해야만 진입이 허용되는 완벽한 실명제의 세계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터넷 이용자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사람만이 PC통신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욕설과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골칫거리였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익명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실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던 PC통신에서도 해결되

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들이 실명제를 통해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언론사 게시판에서도 여전히 사이버 폭력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실명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얼마 전 클론의 강원래씨 미니홈피에서 벌어진 일부 네티즌들의 사이버 폭력에서도 보았듯이 실명제는 결코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양승훈 (ysh1225) 찬성 8 반대 0	이 교육망쳐먹은놈애 주말농장으로 샀으면 토.일내려가서 농사져야지!바쁘다고!바빠!노는날마다 콜프대메고 콜프치러다니는놈이 뭐가 바쁘당개! 투기 혈려고 땅샀지!투기군애!!! (09/13 20:38) 신고 삭제
이재기 (dogseul) 찬성 4 반대 0	꼬라지에 하는 말 믿을 수 있나? 당장 총리 자리 잘라봐. 매일 내려가서 포도 농사를 짓나 보게. 농사 짓는 것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마 10분도 팽이질이나 삼질 할까? 입으로야 할 못해. 이런 미치광이들 때문에 국민들만 불쌍하다. (09/13 20:37) 신고 삭제
김영열 (bomulo) 찬성 3 반대 0	스발노움들...말로는 궁민을 위한다...어쩐다..개주동이 나불대고는... 뒷구멍으로는 호박씨를 짖구만... (09/13 20:32) 신고 삭제

(조선일보 실명이용자들의 댓글)

NO.6092 (2005.07.21 16:41)

ㅋㅋ왜다시복귀했나--미친님
그냥애자로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강원래: 미쳤으니깐.....ㅋ (2005.07.21 22:30)

NO.6107 (2005.07.21 23:40)

장난하니 니도연예인이냐??
팬클럽죽어 ㅋㅋ

강원래: 저는 강원래입니다. 보아하니 나이 어린 학생같은데... 경고합니다.
경고했는데 계속 이러시면 신고조치합니다. (2005.07.21 23:56)

TODAY 1082 | TOTAL 477296 강원래님의 미니홈피

럼 원래오빠 화이팅~~

NO.8582 (2005.08.09 19:21)

미친 XXX 아 XX 짜증나
개 XXXXX 애자톨추 다리장애인
척추다 XX된XX XXXXX
제발 티비에 나오지좀마 XXX 아
개XX XXXXXX XXX XX 아
개XXXX 장애인 XX야

강원래: . (2005.08.09 23:23)

(사이월드 강원래 미니홈피의 사이버폭력)

2. 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초래한다

흔히 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고보면 최소한 한국의 인터넷은 이

미 상당부분 실명화된 공간이다. 인터넷 이용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많은 서비스들은 진작부터 실명 확인을 통한 로그인 절차를 밟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명 실명 확인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서버에는 이용자의 IP 주소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해낼 수 있는 구조이다. 지금의 인터넷은 결코 익명의 바다가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실명확인 장치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사건이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필요성의 근거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개똥녀 사건이나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등은 역설적이게도 실명성이 초래한 사태의 심각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언론 등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판 공간에서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올려진 욕설 등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만 강조해 왔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익명의 욕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스러운 것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 신상명세가 고스란히 공개되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사건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정도로 가공할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은 엄밀히 말해 익명의 욕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신상명세가 노출된 공간은 다름아닌 완벽한 실명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였다. 이처럼 실명제는 익명정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이버 폭력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장치이다.

지난 2003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약 26%의 네티즌이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미 자신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명제란 인터넷의 폐해와 부작용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악의적인 글들이 마구 올라오는 역효과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정보 침해라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동시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저지를 불법행위의 누명을 뒤집어쓰는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 하겠다.

3.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익명성은 힘없는 일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다. 익명성의 제거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특히 정치 관련 이야기는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2003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네티즌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떳떳하게 이름 걸고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익명의 베일 뒤에 숨어서 말하는가?”라고.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투표나 선거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은 익명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역시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듯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이나 국민 여론의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동원되는 제도적 과정들은 한결같이 익명의 의견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자유롭고 솔직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란 바로 익명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이렇듯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에서는 익명의 표현은 비겁하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그 폐해만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네티즌을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이러한 주장야말로 정말로 비겁하고 악의적인 논리이다. 익명성은 네티즌들에게 자유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강제적인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고, 결국 인터넷 공간은 물론이요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4. 강제적 실명제는 시대착오적인 통제주의이다

사실 인터넷의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익명이 더 좋은가 실명이 더 좋은가” 하는 단순한 양자 택일의 문제에 놓여 있지 않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이 곧 익명성만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는 한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나 IT 관련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실명 운영’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제도로서 규제하고자 하는 ‘강제적인 실명제’이다. 익명성과 실명성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절대 선, 혹은 절대 악으로 간주할 일은 결코 아니다.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에 이토록 많은 걸림돌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추진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자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명제를 법적 장치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익명이나 실명이나는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이지 굳이 법조항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했거나 혹은 익명게시판과 실명게시판을 나누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즉 게시판 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실명제로 운영할 것인가는 지금처럼 게시판 운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이용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주로 글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실명 게시판에 주로 글을 올릴 것인가 역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각자의 자유 의지에 충실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자유 의지 또한 존중해주면 그뿐이다. 그게 바로 인터넷의 문화이다. 이러한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모든 인터넷 공간을 실명제라는 획일적인 제도로 강제화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경계하고 반대해야 할 가장 위험스러운 대상임에 틀림없다.